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 통일의 성취를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은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실행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
3. 기관 추천 4인 : 평화공동체운동본부 1인,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본 위원회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은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4장 회 집

제8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5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제9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그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1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및 시행

제12조

1. 본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본 위원회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